

"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"



## 전북대학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안내

1. 관련 : 총무과-5682(2022.04.05.), -11426(2022.07.12.)
2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「전북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함을 안내하오니 **계약 업무 추진시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 전북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> 일부 발췌

**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** 전북대학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- ※ 단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
  - 전기·가스·수도등의 공급계약
  -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·구매·임차 및 용역 계약
- ※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편람에 따라 동일한 업체와 반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, 업체의 대표 또는 우리대학의 제한 대상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고,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

- 붙임 1. 관련 공문 각 1부.  
2. (서식)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.  
3. (참고\_권익위)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(수의계약 발체) 1부. 끝.

# 전북대학교총장

관인생략

수신자 1. 본부(24), 2. 대학및전문대학원(20), 3. 부속기관(40), 4. 연구인프라구축사업단(104), 5. 연구소(88), 전북대학교 교수회장

주무관

장종우

총괄팀장

이경환

과장

전결 2022.07.13.

김명숙

협조자

시행

재무과-16717

( 2022.07.13. )

접수

혁신지원사업단-2785

( 2022.07.13. )

우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

/www.jbnu.ac.kr

전화번호 063-270-2053

팩스번호 063-270-2059

/jjangdoc@jbnu.ac.kr

/공개